1월 2월 부동산세법 4주차 수업 자료

메가랜드 이송원 교수

취득세 과세표준

구 분	사실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취득가액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circ	0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circ	0
판결문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0	0
화해, 포기, 인낙,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의 경우	×	×
법인이 작성한 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 증되는 경우	0	0
개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	×
공매(公賣)방법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0	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 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격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0

취득가액 포함 여부

구 분	개인	법인	구 분	개인	법인
① 건설자금 이자	0	0	⊙ 광고선전비	×	×
©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0	0	① 전기·가스·열 등의 시 설물 이용에 따라 지 급하는 분담금	×	×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 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바수 수료	0	0	© 취득물건과 별개로 지 급되는 비용	×	×
② 할부이자, 연체료	×	0	② 부가가치세	×	×
②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 개보수	×	0	① 할인액	×	×
🛈 채무인수액	0	0	⊞ 정원 설치비용	0	0
○ 주택채권 매각차손	0	0			
◎ 붙박이 가구 등 설치비용	0	0			

건축 등 과세표준

구 분	신규(소요된 가액)	기존(증가된 가액)
신축, 재축	\circ	
증축, 개축		0
이전, 개수		0
차량 등의 종류변경		0
토지의 지목변경		0

토지 지목변경 - 가액증가

구 분	과세표준
개인인 경우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 -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
법인인 경우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입증된 비용)

시가표준액

	구 분	시가표준액
	토 지	개별공시지가
주 택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十 智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취득세 세율

			세 율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3)%
			주택 여	기외	(4)%	
유상	승계	·계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	(1)%	
취득			-	주택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가격 × 2/3억 - 3
				취득 당시 가액 9억원 초과	(3)%	
—	상속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2.3)%	
무상 승계	취득	농지 이외	븨		(2.8)%	
하게 취득	증여	개 인			(3.5)%	
	기 취득 비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일반적인 경우		(2.8)%				
공유·힙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2.3)%	

취득세 세율

구 분		농 지			농지 이외			
유	상승계취득	(3)%			(4)%		
	상속취득		(2.3)%		(2.8)%			
증여	개인			(3.5)%		
취득	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2.8)%		
<u> </u>	유물 분할			(2.3)%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세율

구 분		세	윧
一 一 亡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이외
	1주택	주택가격에 따라 (1%, 2%, 3%)	
개 인	2주택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2)배	주택가격에 따라 (1%, 2%, 3%)
1	3주택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4)배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2)배
	4주택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4)배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4)배
È	법인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4)배	

주택 증여 취득세 세율

3	구 분	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4)배
주택 증여	공시가격 3억원 미만	(3.5)%
조정대상지역 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3.5)%
외 주택 증여	공시가격 3억원 미만	(3.5)%

세대구분

구	분	세대 포함
별도 세대 구성 배우자		동일 세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기준중위소득 40% 이상	별도 세대
미온원 30세 미원의 작세미욱 	기준중위소득 40% 미만	동일 세대
자녀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65세 미만 직계존속 동거봉양	동일 세대
사녀가 작게근목을 중기중앙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별도 세대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90일 미만 출국	동일 세대
[귀꼭, 단구경 경원으도 출시 	90일 이상 출국	별도 세대

주택 수 산정

	구 분	주택 여부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포함
	일반적인 경우	각각 주택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	세대 1주택
공동소유주택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1순위 : 지분율이 큰 자
		2순위 : 거주한 자
		3순위 : 연장자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제외
상속개시일로투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제외

특례세율

(구)취득세 + (구)등록세 = (현)취득세

과세 과세 표준세율

비과세 과세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과세 비과세 중과기준세율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취득

	중과세 여부	
고급오락장 취득		4배 중과세
고급으락장용 건축물을 취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	중과세 제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 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 착공	중과세 제외

고급선박 취득

구 분	중과세 여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중과세 제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 실험, 실습 용도에 사용	중과세 제외
서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실험, 실습 용도 이외에 사용	중과세

고급주택 취득

	구 분	중과세 여부
고급주택 취득		4배 중과세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	중과세 제외
날로부터 60일 이내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 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 착공	중과세 제외

국세와 지방세 납세지 구분

구 분	국 세	지방세	과세권자	납세지
취득세		0	특, 광, 도	
등록면허세		0	도, 구	물건소재지
재산세		0	시, 군, 구	
종합부동산세	0			주소지
양도소득세	0			十年年

취득세 납세절차

	구 분	신고납부기한
일반적인	취득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국내 주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	국외 주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로부
납한 경우		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기	한 이내에 등기하거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
나 등록하	려는 경우	까지
추 가	비과세 감면 배제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취득 후 중과세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가산세 종류

구 분	종류			가산세	율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10)%
റി ലി.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40)%
일 반 공 통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0 0	가산세	부정 무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		25/1	00,000 -	+ 3/100
	법인이 장부 기록 비치의무 위반 가산세		(10)%
취득세	중가산세(취득 후 신고 없이 매각) ⇒ 취득세만 적용		(80)%

중가산세

	가산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 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	80%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일반가산세
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80%	
지목변경, 종류변경 등 취득 하지 아니하고 매각	일반 가산세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

구 분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취득세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	×
재산세	×	그 세액 2,000원 (미만)
종합부동산세	×	_
양도소득세	×	_

세목별 부가세

	1.1 1 1	
본 세	부 가 세	
	일반적인 경우	감면의 경우
취득세	①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② (지방교육세) ② (지방교육세) ③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20%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_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양도소득세	<u>-</u>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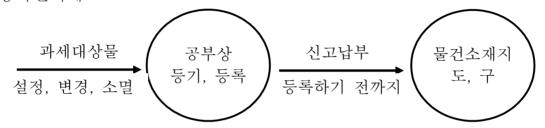
취득세 비과세

구 분			비과세 여부	
국가, 지방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경우			
외국정부	시그기 대한민국 정부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			
4437	대한민국	정부 취득에 대하여 과세	과세	
	일반적인 경우		비과세	
기부채납	타인에게 매각, 증여		과세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6) 2) 2) 9	임시사용 1년 이하			
임시사용 건축물		사치성 재산	과세	
신크현 	존속기간이] 1년 초과	과세	

취득세 비과세

	구 분		
	위탁자 ⇒ 수탁자에게 이전		비과세
	수탁자 ⇒ 위탁>	자에게 이전	비과세
신탁재산	탁재산 수탁자 ⇒ 신수탁자에게 이전		비과세
	주택조합과 조합원간 부동산 취득		과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과세
カレスロ	시가표준액 일반적		비과세
공동주택	9억원 이하	대수선	과세
개 수	시가표준액 9억	원 초과	과세

등록면허세



등록이란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u>설정·변경 또는 소멸</u>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 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u>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u> <u>등록은 제외</u>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1.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2.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 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3.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4.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구 분	납세의무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경매신청등기	채권자
가압류, 가처분등기	채권자
저당권 말소	채무자, 현재 소유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구 분	과세표준
지상권	부동산가액
가등기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채권금액
지역권	요역지가액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가액	(0.8)%	
소유권의	유상		부동산가액	(2)%
고ㅠ된의 이전등기	무상	상속	부동산가액	(0.8)%
의신공기 		증여	부동산가액	(1.5)%
	지상권		(부동산가액)	
무기키 이키기이	저당권		(채권금액)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역권		(요역지가액)	
- 결정 옷 의신 -	전세권		(전세금액)	0.2%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채권금액)	
가등기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국세와 지방세 납세지 구분

구 분	국 세	지방세	과세권자	납세지
취득세		0	특, 광, 도	
등록면허세		0	도, 구	물건소재지
재산세		0	시, 군, 구	
종합부동산세	0			주소지
양도소득세	0			十年八

등록면허세 납세절차

	구 분	신고납부기간		
일반적인 경우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무신고		
전까지 납부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추가신고	비과세 감면 배제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十八亿工	등록 후 중과세	중과세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가산세 종류

구 분				가산세를	<u>e</u>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10)%
OJ HJ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40)%
일 반 공 통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0 0	가산세	부정 무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			25	/10	0,000 +	3/100
	법인이 장부 :	((10)%	
취득세	중가산세(취득 후 신고 없이 매각)		((٥٥) 07
	⇒ 취득세만	· 적용	(80)%)%	

세목별 부가세

본 세	부 가 세	
	일반적인 경우	감면의 경우
취득세	①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② (지방교육세) 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20%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양도소득세	_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

등록면허세 비과세

	비과세 여부	
국가, 지방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한 경우	
이그저ㅂ	대한민국 정부 등록에 대하여 비과세	비과세
외국정부	대한민국 정부 등록에 대하여 과세	과세
회사의 정리	비과세	
법인의 자본	과세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기		비과세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비과세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		비과세